

제21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
제1차 운영위원회(2016. 1. 26.)

조례안 검토 보고서

의회 운영위원회

[전문위원 최 주 현]

거창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
검 토 보 고 서

1. 검토경과

가. 발의일자: 2016. 1. 8.

나. 발 의 자: 이성복 · 강철우 · 표주숙 · 권재경 · 김종두 ·
최광열 · 형남현 · 이홍희 · 변상원 · 박희순 ·
김향란 의원(11명)

다. 회부일자: 2016. 1. 18.

2. 개정이유

- 현행 「거창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에서는 제1차 정례회 개최시기를 6월 20일로 정해 놓고 있으나 2016년 7월 초에는 행정사무감사와 하반기 의장단 선거가 겹치면서 의사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집회일을 변경코자 함.

3. 주요골자

- . 집회일 변경(안 제4조)
 - 제1차 정례회는 6월 20일 ⇒ 6월 10일

4. 참고사항

- 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,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
- 나. 입법예고: 해당사항 없음
- 다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
- 라.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.

5. 검토의견

- 이 개정 조례안은 거창군의회는 효율적인 의사 운영을 위하여 관련 조례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
- 주요 내용은
 -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을 6월 20일에서 6월 10일로 변경코자 함.
- 그 밖에 일반적인 형식이나 체계, 상위 법령에는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6. 참고자료

관련법령 발췌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47조(개회·휴회·폐회와 회의일수) ① 지방의회의 개회·휴회·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정한다.

□ 지방자치법 시행령」

제54조(정례회의 집회일 등) ① 법 제44조에 따른 정례회 중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·7월 중에, 제2차 정례회는 11월·12월 중에 열어야 한다. 다만,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9월·10월 중에 열 수 있다.